

김포시에서는 대중교통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 다중이용시설 화재 · 감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보험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2. 보장기간 : 2022. 2. 28. ~ 2023. 2. 27.

3. 청구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4. 문의 : DB 손해보험 컨소시엄 (☎1522-3556)



김포 시민안전보험 홈페이지

※ 타 제도 및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만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개물림 사고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개물림 사고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전세버스 포함,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2,000만원 한도	유독성 물질 사망	김포시민이 유독성 물질에 불의의 중독 및 노출에 의한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김포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를 입는 경우 (전세버스 포함, 택시 제외)	100만원한도 (부상등급 1급~13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화상 수술비	김포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물놀이 사고 사망	김포시민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김포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만15세 ~ 만80세)	300만원
상해사망 장례비지원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 이용으로 발생한 장례비용 지원 (교통사고 제외,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김포시민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2,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상해 후유장애	김포시민이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30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김포시민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부상등급 1급~10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 김 포 시